

서울특별시 체육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

검 토 보 고

1. 회부경위

- 가. 의안번호 : 제630호
- 나. 발 의 자 : 최기찬 의원 외 27명
- 다. 발의일자 : 2023년 3월 29일
- 라. 회부일자 : 2023년 4월 3일

2. 제안이유

- 서울시의 장애인 선수의 보조 인력 지원, 장애인 체육활동 편의 제공 등 장애인 체육활동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장애인의 건강향상과 복지증진을 도모하고자 함.

3. 주요내용

- 서울시 장애인 선수가 대회 출전 시, 장애인 선수의 보조 인력을 지원 할 수 있도록 규정함(안 제17조제1호의2 신설).
- 장애인을 위한 체육활동 관련 정보의 제공을 규정함(안 제17조제5호의2 신설).

- 장애인 체육활동 진흥 및 참여를 위한 편의제공 의무를 규정함(안 제17조제2항 신설).

4. 검토의견(수석전문위원 주우철)

가. 개정안의 개요

- 동 개정안은 장애인 선수가 전국체육대회 등 경기에 참가하는 경우 장애인 선수에 대한 보조 인력 지원, 체육활동 관련 정보 제공, 장애인의 성별과 특성을 고려한 편의제공 등 장애인의 건강향상과 복지증진을 위해 발의되었음.

나. 보조 인력 지원 신설(안 제17조제1호의2)

- 개정안은 서울시 장애인 선수가 전국체육대회, 전국동계체육대회, 전국학생체육대회 등 시장이 지원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대회에 출전할 경우 보조 인력을 지원하도록 하고 있음.
- 현재도 서울시 장애인 직장운동경기부가 출전하는 대표적인 대회인 전국 장애인체전·동계체전·학생체전의 경우, 선수에게 일대일로 보조 인력을 배치하고 있음.
- 하지만 보조 인력 1명이 선수 여러 명을 보조하거나 이마저도 경기시간이 겹치는 경우에는 보조를 할 수 없는 열악한 상황이 발생되고 있어 제도적 지원이 시급한 실정임
- 따라서 경기 중 안전사고의 우려가 있어 장애인 선수에 대한 보조인력 지원을 제도화하는 것은 보다 안정적인 지원이 이루어질 것이라는 신뢰성을

확보한다는 측면에서 바람직한 조치로 볼 수 있음.

〈보조 인력 운영 현황〉

□ 보조 인력 1인당 필요 예산

- 장애인체전: 330천원(숙박6박)+175천원(식비7일)+175천원(일비7일)+69천원(교통1회)+120천원(단복)=869천원
- 장애인동계체전: 220천원(숙박4박)+125천원(식비5일)+125천원(일비5일)+69천원(교통1회)+190천원(단복)=729천원
- 장애학생체전: 220천원(숙박4박)+125천원(식비5일)+125천원(일비5일)+69천원(교통1회)=539천원

□ 대회별 참가인원 및 필요예산(2023년도 사업계획(안) 기준)

대회명	참가 선수	보조 인력 1인 소요 비용	필요 보조인력 (보호자)	총 소요비용	현재 보조 인력 지원 인원 (보호자)
계	880명	-	880명	700,220천원	200명
전국장애인체전	650명	869천원	650명	564,850천원	130명
전국장애인동계체전	60명	729천원	60명	43,740천원	10명
전국장애학생체전	170명	539천원	170명	91,630천원	60명

※ 예상되는 보조 인력은 880명이며 보조인력 1인당 전국체전 86.9만원, 동계체전 72.9만원, 학생체전 53.9만원으로 총 7억원이 소요됨.

다. 체육활동 관련 정보제공과 편의제공 등 (안 제17조제5호의2, 안 제17조제2항 신설)

- 개정안은 장애인을 위한 체육활동 관련 정보를 제공하고 시에서 운영하거나 지원하는 체육 프로그램이 장애인의 성별, 장애의 유형 및 정도, 특성을 고려하는 등 장애인의 참여를 위하여 필요한 정당한 편의를 제공하도록 규정하고 있음.
- 장애인 생활체육은 참여율이 지속적으로 증가하는 반면, 열악한 수익구조

로 민간영역에서 자생하기 어려워 공공 정책의 의존도가 높은 편임.

- 이에 장애인의 전문체육, 생활체육 활성화를 위해 서울시장장애인체육회는 장애인체육 홍보 사업에 비중을 높이고 있으나 여전히 시민의 기대에 못 미치는 상황임.
- 따라서 개정안은 장애인 생활체육 프로그램, 생활체육 대회, 체육시설 안내 등을 다양한 채널로 홍보하는 것을 명문화함으로써 장애인 체육 활성화를 견인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됨.
- 또한 성별, 장애유형별 편의제공은 「장애인차별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」에서 ‘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장애인 등에게 정당한 편의가 제공될 수 있도록 필요한 기술적·행정적·재정적 지원을 하여야 한다’고 규정되어 입법근거 마련에는 문제가 없는 것으로 판단됨.
- 또한 「스포츠산업 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」(김예지 의원 대표 발의, 2022.7.4. 계류 중)도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가 스포츠산업의 진흥을 위한 각종 시책을 수립·시행 장애인에 대한 ‘정당한 편의’ 제공 노력을 의무화하는 내용을 담고 있어 정부도 장애인 체육활동의 질적성장을 도모하는 추세인 것으로 보임.

붙임 1**집행부 검토의견**의안번호
0630**서울특별시 체육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**

발 의	제 안 자 최기찬 의원 (더불어민주당)	제안일자 2023.03.29.	소관 상임위 보건복지위원회		
주요내용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○ 제안이유 : 장애인 체육활동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장애인의 건강향상과 복지증진 도모 ○ 주요 내용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가. 서울시 장애인 선수의 대회출전 시 보조인력을 지원 나. 장애인을 위한 체육활동 관련 정보 제공 다. 장애인 체육활동 진흥 및 참여를 위한 편의제공 의무 규정 				
추진경과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○ 2023.3.29. 최기찬 의원 발의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- (찬성) 강동길, 강석주, 김 경, 김규남, 김성준, 김영철, 김원중, 김원태, 김형재, 남창진, 박철성, 서상열, 서준오, 유만희, 유정인, 유정희, 윤영희, 이영실, 이용균, 이원형, 이종태, 임규호, 임춘대, 전병주, 정준호, 한 신, 황철규 의원(28명) 				
부 서 검 토 의 견	원안가결(○) / 수정가결 () / 부결() / 보류()				
쟁점사항 (의회동향, 문제점 등)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○ 원안 수용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- 현재 전국장애인체육대회 등 대회출전 시 장애인 선수의 보조 인력 지원을 실시하고 있으나, 이번 개정(안)을 통해 보조 인력 지원에 대한 근거를 마련함과 동시에 좀 더 촘촘한 지원으로 서울시 선수단의 경기력 향상에 기여할 것으로 예상됨. - 장애인 체육활동 관련 정보 제공 및 체육프로그램 참여를 위한 편의 제공을 통해 장애인의 체육활동 참여를 확대하고 건강증진을 도모할 수 있을 것임 				
대응방안	○ 해당사항 없음				
담당부서	체육진흥과	팀장	조희정(☎2133-9743)	담당	이지은(☎2133-9744)